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윤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 -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기준을 명시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 및 시설까지 확대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 - 한국산업 표준 인증 제품 등 관련 법에 의해 인증 받은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기준 마련(제2조).
  - 안전에 취약한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로 비치 장소 확대(안 제3조).
  - 협력체계 구축 명시(안 제7조 신설).

- 방연마스크 비치 상황 점검과 정책 효과를 위한 평가 조항 마련(안 제8조 신설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방연마스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 권장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- 아울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만족도 등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